

'19. 10. 22. 제 정  
'21. 7. 21. 일부개정  
'22. 7. 8. 일부개정  
'23. 10. 13. 일부개정

**국군간호사관학교 강사 임용 예규**

**목 차**

<b>제1장 총칙</b> .....	<b>3</b>
제1조(목적) .....	3
제2조(적용범위) .....	3
제3조(자격) .....	3
제4조(담당 교과목) .....	3
제5조(임용) .....	3
제6조(임용계약) .....	3
제7조(강의시간) .....	3
<b>제2장 신규임용 및 재임용</b> .....	<b>4</b>
제1절 신규임용 .....	4
제8조(공개임용의 원칙) .....	4
제9조(신규임용절차) .....	4
제10조(심사위원회) .....	4
제11조(임용결격사유 확인) .....	5
제2절 재임용 .....	5
제12조(재임용시기) .....	5
제13조(재임용절차) .....	5
제14조(강사재임용 심사위원회) .....	5

<b>제3장 임무 및 신분보장</b> .....	5
제15조(강사의 임무) .....	5
제16조(강사의 신분보장) .....	6
제17조(당연 퇴직) .....	6
제18조(면직) .....	6
제19조(사직) .....	6
<b>제4장 임금 및 복무 등</b> .....	6
제20조(임금) .....	6
제21조(복무 등 근무조건) .....	6
제22조(증명서 발급) .....	7
<b>제5 장 유효기간</b>	
제23조(유효기간) .....	7
부칙 .....	7
별표 및 별지 .....	8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강사 임용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학교에서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사에게 적용한다.

### 제3조(자격)

강사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단, 원어민 영어강사는 외국인 출입국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영어를 공용어로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제4조(담당 교과목)

교과목 운영은 학교 강의 개설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는 해당 교과목 담당 강사와 교과목 운영 관련 사항을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제5조(임용)

- ① 강사는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임용한다.
- ② 강사의 임용 개시일은 매학기 개강일로 하고,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단,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퇴직·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임용한다.
- ③ 학교는 강사의 신규임용 기간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그 이후는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 제6조(임용계약)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용확정자와 서면으로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1. 임용기간 및 학기별 주당 교수시간
2. 임금 지급 방법
3. 근무조건
4. 면직사유
5. 재임용 조건 및 절차
6. 그 밖에 강사의 임용과 관련하여 계약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강의시간)** 강사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학기 중 매주 6시간 이하로 한다. 단, 학교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주 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사의 교수시간을 정할 수 있다.

## 제2장 신규임용 및 재임용

### 제1절 신규임용

**제8조(공개임용의 원칙)** 신규 강사는 교원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임용 하여야 한다. 단, 제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1년 미만으로 임용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9조(신규임용절차)

- ① 학교는 신규 강사 채용시 강좌명, 채용인원, 제출서류를 포함한 채용공고를 학교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5일 이상 공고한다. 다만, 적합자 또는 지원자가 없어 재공고 하는 경우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② 신규임용 희망자는 임용 지원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사임용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최종학위 학력증명서 1부
  3. 교육경력·연구경력 증빙자료 각 1부
  4. (해당 시) 연구논문 각 1부
  5. 기타 관련 자격증 사본
- ③ 학교는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임용이 된 이후라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강사임용 심사위원회는 서류심사를 통하여 각 과목 신규임용후보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 ⑤ 학교는 각 과목 신규임용후보자의 순위가 결정되면, 교육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임용예정자 검증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으로 신규임용자를 확정한다.

### 제10조(강사임용 심사위원회)

- ① 강사임용 심사위원회는 처장급 교수를 포함한 교수부장이 지명하는 교수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선임교수로 정한다.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교학담당**으로 한다.
- ② 강사임용 심사위원회는 신규임용후보자의 제출서류를 강사임용 서류 심사표에 따라 평가한다. 각 후보자의 최종 점수는 참석위원이 부여한 점수의 평균점으로 하고, 최종 임용후보자는 해당 과목별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심사는 교육 및 실무경력, 연구실적, 전공적합성, 학력사항으로 평가하고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학교는 필요 시 면접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고, 면접심사위원회는 강사임용 면접 심사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임용적합성을 평가한다.

**제11조(임용결격사유 확인)** 학교는 임용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임용예정자에 대해 성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임용예정자는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제2절 재임용

**제12조(재임용시기)** 강사의 재임용 개시일은 매학기 개강일로 한다.

**제13조(재임용절차)**

- ① 학교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강사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임용기간 만료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 ② 해당 교과목이 교육과정 개편으로 폐지된 경우 재임용이 거부될 수 있다.
- ③ 재임용을 희망하는 강사는 임용기간 만료의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임용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간 내 재임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강사는 재임용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강사재임용 심사위원회)**

- ① 재임용심사는 강사재임용 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로 진행한다.
- ②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제10조를 준용한다.
- ③ 심사위원은 강의만족도, 강좌운영, 관련규정 준수 등에 대해 강사 재임용 심사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재임용 평가를 시행하며, 심사결과의 합계 점수 70점 이상 획득 시 재임용이 가능하다.
- ④ 강사의 재임용 여부는 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며 학교장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교육운영위원회는 재임용 결과를 임용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해당 강사에게 통지하며, 재임용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 거부와 그 사유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⑤ 교육운영위원회로부터 재임용거부를 통보받은 강사는 5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강사의 의견이 제출된 경우 학교는 재임용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재심의를 한다. 재임용 심사위원회는 강사가 기준 미충족 등 재임용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교육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 ⑥ 재임용거부를 통보받은 강사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강사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당연 면직된다.

## 제3장 임무 및 신분보장

**제15조(강사의 임무)** 강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계획서 작성 및 공지

## 학교본부(외부 공개용)

2. 담당교과목 강의
3. 생도 성적평가 및 평가결과 제출
4. 담당 과목에 대한 상담 및 지도
5. 생도 교육 및 지도
6. 담당교과목 및 교육 분야와 연계된 학사행정 업무 등

**제16조(강사의 신분보장)** 강사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4조2(강사) 제2항을 준용한다.

**제17조(당연퇴직)** 강사의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 제1항을 준용한다.

**제18조(면직)** ① 학교장은 임용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사를 면직할 수 있다.

1. 임용계약에 따른 담당 교과목 교육 및 관련 행정 업무 수행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2. 군(軍)내 또는 외부에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3. 학교를 공공연히 비방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연구 부정행위 등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 ② 교육운영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의 정도가 면직에 이르는지에 대하여 판단하되, 해당 강사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이 때 교육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9조(사직)** 임용한 강사가 학업, 건강, 신상변동 등 개인 및 기타 사유에 의한 계약기간 만료 전 사직 희망 시 사직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고, 학교장은 필요시 사실관계를 확인 후 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직을 승인할 수 있다. 단,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은 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시행하지 않는다.

## 제4장 임금 및 복무 등

**제20조(임금)** ① 강사료 지급 기준은 당해 연도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따른다.

- ② 학교는 방학기간 중 임금은 학기별 강사료의 2주분 금액을 지급한다.
- ③ 그 밖에 강사료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정한다.

**제21조(복무 등 근무조건)** ① 강사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학교는 강사에게 공동 강의준비실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교내 시설(도서관, 간부식당, 주차장 등) 이용을 허용한다.

제22조(증명서 발급) 학교는 강사가 요청 시 재직증명서(별지 제8호 서식), 퇴직증명서(별지 제9호 서식)를 발급한다.

## 제 5장 유효기간

### 제 23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19. 10. 22.)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1. 7. 2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2. 7. 8.)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3. 10. 13.)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작성관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수부	교무처	교육계획장교	/	975-4522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수부	교무처	교학담당	/	975-4526

국군간호사관학교장

## 별표 및 별지 목차

### 별표 목차

번호	제 목	조(항)	쪽
1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	제3조 제1항	9

### 별지 목차

번호	제 목	조(항)	쪽
1	강사임용 지원서	제9조 제2항	10
2	강사임용 서류 심사표	제9조 제3항	11
3	강사임용 면접 심사표	제9조 제3항	12
4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제11조	13
5	재임용 신청서	제13조 제2항	14
6	강사 재임용 심사표	제14조 제3항	15
7	사직서	제19조	16
8	재직증명서	제22조	17
9	퇴직증명서	제22조	18
10	임용기간 만료통지서	제13조 제1항	19
11	재임용 거부 통지서	제14조 제4항	20
12	이의 신청서	제14조 제5항	21

【별표 제1호】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

(단위: 년)

학력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연구·교육	경력연수	연구실적 연수	교육경력 연수	계	연구실적 연수	교육경력 연수	계
직명							
교수		4	6	10	5	8	13
부교수		3	4	7	4	6	10
조교수		2	2	4	3	4	7
강사		1	1	2	1	2	3
조교	근무하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사람						

비고 :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강사임용 지원서

## 강사임용 지원서

지원과목	지원 과목 '모두' 기입	접수번호	
------	---------------	------	--

**1. 인적사항**

성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현주소			
이메일			연락처

**2. 주요학력사항**

학교명	전공	수학기간	학위	졸업여부
		. . . ~ . . .		<input type="checkbox"/> 과정중 <input type="checkbox"/> 수료 <input type="checkbox"/> 졸업
				<input type="checkbox"/> 과정중 <input type="checkbox"/> 수료 <input type="checkbox"/> 졸업
				<input type="checkbox"/> 과정중 <input type="checkbox"/> 수료 <input type="checkbox"/> 졸업

**3. 교과관련 자격사항·수상내역**

※ 자격 : 국가공인자격에 한함

자격증명/수상내역	발급기관	취득/수상 일자

**4. 주요교육·연구경력**

기간	소속기관명(직위)	경력사항	강의과목(주당 시수)	학점(총학점)
. . . ~ . . .				
. . . ~ . . .				
. . . ~ . . .				

**5. 주요연구실적(최근 5년간)**

제목	학술지/출판사	구분*	게재확정일자	저자수	참여형태

※ 연구실적 : 논문·저서·역서·공연실적 등

※ 구분 ① SCI/SCOPUS, AHCI, SSCI, SCIE 등재 학술지 ② ①의 등재후보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③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④ 대학논문집, 기타 학회/학술단체의 학술지 ⑤ 국제 전문서적(ISBN부여)  
 ⑥ 국내 전문서적(ISBN부여) ⑦ 번역서적, 학생교재 ⑧ 개정판, 편저, 자료집, 편람

**6. 강사임용 심사위원회 구성 시 기피(忌避) 위원 유무**

<input type="checkbox"/> 기피 위원 없음	<input type="checkbox"/> 기피 위원 있음 (이름 : _____ )
-----------------------------------	---

첨부 : 교육·연구경력·연구실적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지원자 : \_\_\_\_\_ (인)

【별지 제2호】 강사임용 서류 심사표

## 강사임용 서류 심사표

지원과목		접수번호	
------	--	------	--

구 분	세 부 내 용	배 점	점 수
1. 교육 및 실무경력 <b>(50%)</b>	모집 교과목 관련 강의 및 실무경력	50	
2. 연구 실적 <b>(20%)</b>	연구, 학술대회 발표 등 학문 기여도	20	
3. 전공적합성 <b>(20%)</b>	모집 교과목과 전공(교과)과의 적합성	20	
4. 학력사항 <b>(10%)</b>	학력에 따른 배점	10	
5. 자격·수상 내역 <b>(가산점)</b>	교과 관련 자격·수상 * 자격(국가공인자격)·수상 내역 :	최대 2	
합 계	<b>100점 + 가산점</b>		

평 가 위 원 : 직책
계급
성명
년 월 일 (서명)

【별지 제3호】 강사임용 면접 심사표

## 강사임용 면접 심사표

지원과목		접수번호	
------	--	------	--

구 분	세 부 내 용	배 점	점 수
임용적합성 (20%)	교원으로서의 가치관과 품위	5	
	전문지식 및 학습자 이해	5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5	
	부대 내 규정 준수 노력	5	
합 계	<b>20점</b>		

종합의견	
------	--

년    월    일

평 가 위 원 : 직책

계급

성명

(서명)

【별지 제4호】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_\_\_\_\_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5호】 재임용신청서

※재임용심사 결과 합계점수 7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함

## 재임용 신청서

**1. 인적사항**

성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현주소				
이메일			연락처	

**2. 임용 기간 중 강의 만족도**

연도	학기	과목	구분 *중간, 기말	강의만족도(점)

**3. 강좌 운영 자가 평가**

구분	자가 평가
강의계획서 작성 사항 준수 : 기한, 형식·내용 준수	
수업 일자, 시간 준수	
평가 관련 사항 준수 : 문항 출제, 채점, 환류	

**4.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관련 규정 : 군인 지위 및 복무 기본법, 국방보안업무훈령

구분	자가 평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불온표현물 소지·전파 등 금지	
정치 운동의 금지	
다문화 존중	
개인소유 정보통신장비* 통제: 보안서약서 작성 및 준수	
정보통신 시스템 관리 준수**	

\* 개인소유 정보통신장비 : 스마트폰, 블랙박스, 네비게이션, 웨어러블 기기 등

\*\* 미준수 예 : 군 정보통신설비 손괴, 비인가 상용정보통신장비 반입·사용, 상용 정보통신 장비 및 SNS 등으로 비밀/일반 군사 자료 저장·촬영·전송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인)

【별지 제6호】 강사 재임용 심사표

## 강사 재임용 심사표

담당과목	성명
------	----

구분	세부내용	배점	점수
1. 강의만족도 (60%)  * 강의한 학기의 과목별 만족도의 평균 만족도	중간 평가 (25%)  강의만족도에 따라 배점	25	
	기말 평가 (35%)  강의만족도에 따라 배점	35	
2. 강좌 운영 (25%)	강의계획서 작성 - 기한, 형식·내용 준수	5	
	수업 일자 / 시간 준수	10	
	평가 관련 사항 준수 - 문항출제, 채점, 환류	10	
3. 관련 규정 준수 (15%)  * 보안관련 사고는 경중도에 따라 10점까지 감점 가능	제반 규정 준수  * 미준수 발생 시 건당 2점 감점	15	
합계	100점		

년    월    일

평가위원 : 직책

계급

성명

(서명)



【별지 제8호】 재직증명서

# 재 직 증 명 서

제 0000 - 호

인적 사항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사 항	주 소			
재직 사 항	소 속	국군간호사관학교		
	직 위	강 사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현재까지( 년 개월)		
용 도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국군간호사관학교장(직인)

【별지 제9호】 퇴직증명서

# 퇴 직 증 명 서

제 0000 - 호

인적 사항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연 락 처			
퇴직 사항	소 속	국군간호사관학교		
	직 위	강 사	임용일자	
	퇴직일자		퇴직사유	
용 도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0 년 월 일

국군간호사관학교장(직인)

【별지 제10호】 임용기간 만료통지서

## 임용기간 만료통지서

1. 수신자

성명		담당과목	
----	--	------	--

2. 임용기간

--

3. 내용

년 월 일부로 체결한 강사임용계약이 년 월 일부로 종료됨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4. 재임용 절차

- 가. 서면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임용 신청서(첨부 양식 참고)를 교무처에 제출합니다(이메일 afna4523@mnd.go.kr 제출 가능). 기간 내 재임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임용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재임용심사는 재임용 심사표에 따라 재임용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하며, **합계점수 7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합니다. 심사결과가 재임용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강사님께 재임용요건 미충족 사항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다. 강사의 재임용 여부는 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 라. 문의처 : 국군간호사관학교 교무처 042-878-4522

년 월 일

**국군간호사관학교장**

【별지 제11호】 재임용 거부 통지서

## 재임용 거부 통지서

1. 수신자

성명		담당과목	
----	--	------	--

2. 임용기간

--

3. 내용

강사 재임용 심의 결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 드립니다.

4. 재임용 심의 결과 및 사유

가. 임용기간 만료 통지서 발송: 년 월 일

나. 재임용 신청서 접수: 년 월 일

다. 재임용 심사위원회: 년 월 일

☞ 결과 및 사유:

(예시) 재임용 심사 점수 총 60점으로 기준 점수 미달

(합계점수 70점 이상 획득 시 재임용 가능)

[강의만족도(50점) 중 15점, 강좌운영(25점) 중 22점, 관련규정 준수(25점) 중 23점]

라. 교육운영위원회: 년 월 일

☞ 결과: 재임용 부결

5. 이의 신청 안내

위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희망하실 경우 본 통보일로부터 5 근무일 이내( 년 월 일까지) 이의 신청서(첨부 양식 참고)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해 주십시오(이메일 afna4523@mnd.go.kr 제출 가능).

기타 문의는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국군간호사관학교 교무처 042-878-4522

년 월 일

국군간호사관학교장

